

교육봉사활동 안내문

교원자격검정 무시험검정 절차에 따라 교원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모든 예비교원은 교육봉사활동 60시간(2학점 P/F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교육봉사활동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교육봉사활동 운영 안내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3. 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등·중등·고등·특수교육대상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·지정·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5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.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·중등·특수학교 7.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·허가증(신고증, 확인증)이 있고,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, 청소년수련원, 자활센터, 어린이집 등 8. 1365(자원봉사포털), VMS(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) 등록기관 중 교육부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(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, 위(Wee) 프로젝트 기관 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기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(혹은 단체) ·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육봉사 인정 활동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보조교사, 부진아 학생지도, 방과후교사, 초등돌봄교실, 늘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 학생 지도,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,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교육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구구입비, 교통비, 식비 등 실비를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 (단, 인건비, 사례비성 실비 수령 시 교육봉사 활동 인정 불가) 2. 한국장학재단 「교·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」 사업을 통해 학습·상담 지원이 필요한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을 지도한 경우 (교육봉사활동으로 최대 60시간까지 인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해당 사업을 통한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학점 인정은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양성과정에 한함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교육봉사 미인정 활동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교육적인 활동이 없는 단순 사회봉사 2. 교육봉사활동 내 오리엔테이션 및 학습지도 외 활동 3. 학교현장실습 중 본인 실습 학교에서 실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실습생의 경우 통상적인 실습시간 외 시간대에 하는 별도의 교육봉사활동은 인정 가능 4. 강사 활동 등 근무지에서의 활동 5. 성인 대상 교육 6. 사회봉사 교과목 등 학점을 인정받은 활동

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	1. 이수기준 : 60시간 이상 (1일 최대 8시간 인정) 2. 60시간 활동 시 2학점 인정 (30시간 당 1학점 인정) 3. 성적은 'Pass' 또는 'Fail' 로 부여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2. 교육봉사활동 인정 처리 절차

가.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

1) 교육봉사활동 사전교육 이수

※ 포털 - 이러닝 - 자율강좌목록 - [사범대학] 교육봉사활동 사전 교육 (강의실 암호:8654)

2) 붙임의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작성하여 학과사무실 제출 → 교학실 승인 문자 확인 후 통합정보시스템 - 학사행정 - 교직 - [교육봉사활동계획신청]에서 교육봉사활동 신청

★ 신청 전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, 교육봉사 인정 활동 해당 여부 학생 본인 반드시 확인
- 유치원 및 초, 중, 고등학교 외 기관 중 위 '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'의 기준 상 애매할
경우 **교학실로 문의(032-835-8652)**

★ 교육봉사활동 시작 최소 일주일 전 신청해야 함

-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 외의 기관일 경우 활동 시작 2주일 전 신청 권고

※신청 후 학과 및 교학실 승인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
후 활동 인정이 안 될 경우 학생 본인에게 귀책사유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인
정 기관 및 활동을 확인하고 1~2주 전에는 신청할 것

★★★ 3) 교육봉사활동 기관이 학교 외 기관인 경우 인정기관 리스트 중 어떤 기관에 해당하는지
증빙서류 또는 정보를 함께 제출

예) 비영리 기관인 경우, 국가 또는 지자체 등록 인가증/허가증 또는 비영리기관 고유번호증

예) 동구청청소년수련관 (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 4번에 해당 근거)

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[시행 2020. 5. 22.] [인천광역시동구조례 제128호, 2020. 5. 22. 일부개정]

제9조(사용자 준수사항) ① 수련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관이 인계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, 설비 등을 철수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(개정 2013.11.13)
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(조직 및 정원) ① 동구 청소년수련관은 시설장, 부장, 팀장으로 구성하며, 정원은 39명을 둔다.(개정 2020.5.22.)
② 시설장은 실근직으로 하며, 수탁기관 대표가 임명한다. 그 외 직원은 시설장의 추천에 따라 수탁기관 대표가 임용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(문조 신설 2013.11.13)

제11조(지원) ① 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, 공무제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.(개정 2013.11.13, 2020.5.22.)
② 식재 (2013.11.13)

제12조(위탁받은 자의 의무) ① 위탁받은 자는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청소년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위탁받은 자는 보충금 및 사용재산물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업무상 물품이나 차용지시 사항을 이행하고,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⑤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계획 작성하고 자체운영 평가한 보고서와 함께 다음 연도 8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신설 2013.11.13)

3) 교육봉사활동 신청 최종 승인 확인 후 교육봉사활동 시작

나. 교육봉사활동 시

1) 교육봉사활동 시간 및 활동 내용 확인

다.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

1)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 **일지 및 확인서** 봉사기관장(유치원장, 학교장 등) 직인 날인

- 교육봉사활동 일지 및 확인서 봉사활동 기간 및 봉사 시간, 활동 내용 확인

- 기관장 직인 명확히 보이도록 기관에 요청

2) 교육봉사활동 자기평가 및 소감문 작성

3) 교육봉사활동 ①계획서, ②일지 및 확인서, ③자기평가 및 소감문을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 [교육봉사활동인정신청]에 신청(봉사 시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입력 가능(셋째 자리 버림))

4)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인정되어 수강 신청 시 Pass 받을 수 있을 학기에 수강신청(학기 말 성적 확인)

3. 교육봉사활동 시 유의사항

가. 교육봉사활동은 입학 후 정규학기(8학기) 내에 자유롭게 실시

※ 정규학기 내 교육봉사활동 미이수 시 초과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후 이수

나. 교육봉사활동 기관 개인 섭외 시 반드시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인지 확인

※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 외 기관 중 위 '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' 기준 상 애매할 경우 교학실로 문의
다. 교육봉사활동 미인정 시간을 제외한 인정 시간이 60시간이 넘는지 확인

라. 교육봉사활동계획 신청 후 계획 변경 시 신청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함. (단, 봉사종료일만 변경된 경우 재신청 불요)